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훈령명

- 「농업관측 실시요령」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농업관측 고도화(소비관측, 농림위성 활용)에 따른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,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농업관측 항목에 주요 농축산물 소비동향 추가(안 제12조제1호)
- 나.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농림위성 데이터를 농업관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항목에 농림위성 자료 추가(안 제14조제4호)
- 다.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431호)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(안 제23조)